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[별지 제23호의11서식] <개정 2018. 6. 20.>

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신고서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 30일

신고인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
	주소	전화번호
	법인명	법인등록번호
교육기관 개요	명칭	
	소재지	

「장사 등에 관한 법률」 제29조의3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의10제1항에 따라 장례지도사 교육기관 설치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

(서명 또는 인)

시·도지사 귀하

신고인 제출서류	1. 정관 1부(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) 2. 현장실습기관과의 현장실습 실시 연계에 관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3.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시설 및 설비의 목록(학습교구 목록을 포함합니다) 1부 4. 시설을 설치할 토지 및 건물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5. 사업계획서 1부 6. 인력의 명단과 그 자격 및 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

처리 절차

신고서 제출	→	신고서 접수	→	검토	→	결재	→	통보
신고인		시·도 (장사업무 담당부서)		시·도 (장사업무 담당부서)		시·도 (장사업무 담당부서)		

210㎜×297㎜[백상지 80g/㎡]